

제 450 호

1974.6.21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 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길호  
전화 7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소  
전화 75-6090

# 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857 호 :	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 3
제 858 호 :	서울특별시세입증수포상금지규조례..... 3
◎ 교 시	
제 74 호 :	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및 지적승인..... 10
제 75 호 :	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..... 10
제 76 호 :	사료성분량고시..... 11
제 77 호 :	사료성분등록고시..... 12
제 79 호 :	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추가규제..... 12
제 80 호 :	사료성분등록고시..... 14
◎ 공 고	
제 110 호 :	환지계획공람공고..... 14
제 111 호 :	서울특별시회계관계기관의공인실조공고..... 16
제 112 호 :	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..... 17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임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**조 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 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 
1974년 6월 11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57 호
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  
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교향악단설치조례중 다  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중 "부단장 및 전임자취사"를  
"부단장, 전임자취사 및 명예  
지휘자"로 하며 동조중 "전임자  
취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음악에  
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음악연주를  
지휘한다" 다음에 "명예지휘자는  
교향악단 발전에 공로가 많은 경  
지 지휘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교  
향악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자문  
을 할 수 있다"를 음악연주를 지휘한다"를  
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
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 
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 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 
1974년 6월 11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58 호

서울특별시세입징수  
포상금 지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세입징수  
및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 
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 
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
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급범위) 다음 각호에  
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 
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.

- 1.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  
무원 (행정직, 임시직, 계약공무원을  
포함한다)

2. 비현실적인 세원과 증은 세원을 포함하여 부과제한 공무원 및 민간인

3. 참합적인 제안으로 선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

제 3조 (지급구분)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

- 1.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: 1건당 200원이상 2,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, 2,000 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
- 2. 도로, 하천,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자; 징수액의 100분의 5
- 3. 세정확상과 시세인상대책을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; 1건당 3만원

②제 1항제 2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.

제 4조 (제안의 심사) 제 3조제 1항 제 3호의 제안의 심사는 서울특별시

직원제안위원회를 관속한다. 다만, 예비심사는 시정확상의 불한다.

제 5조 (비밀지침) 구, 읍장소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일지대장 및 별지 제 2호서식의 증은 세원발발과징 실적과감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
제 6조 (포상금 지급신청) ①구청장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매월 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익월 7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증정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7조 (포상금지급) 시장은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 1 호 서식

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대 장

징수 월일	징 수 자		징 수 액				체 납 자		체 장 확인	비 고
	직 급	성 명	년 도	납 기	체 번 호	세 목	징 수 액	수 소 성 명		



별지제3호서식

월 분 정 수 포 상 금 설 정 서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
참조 : 세 정 과 장

발신 :

구 설 장

구 분	진 수	금 액			포 상 금
		세 액	가 산 금	계	
과년도 채납액 정수					
숨은 세원 발굴 ( 무단 징 용 )					
계					

첨부 : 과년도 채납액 정수내역 1부

숨은 세원 발굴내역 1부





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4 호  
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및지적승인  
 1.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동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(73.4.4)에  
 가. 도시계획시장 시설조서

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  
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 
 1974. 6. 8  
 서울특별시장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시 장	시내 관악구 동작동 307 - 56 부근	5,672.평 (18,717㎡)	상가시장 (지상 1층)

도면생략 :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5 호  
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 
 1.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 을 다음과같이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(73.4.4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  
 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조서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  
 1974. 6. 8  
 서울특별시장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시 장	시내성동구 화양동 167-20	(1,008.3 평) 3,327 ㎡	시장용지해제

도면생략

○ 서울특별시고시제 76호  
 사료 성분량 고시  
 사료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

사료 성분량을 다음과같이 고시한다.  
 1974. 6.  
 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- 1. 사료공장명 : 실촌사료 주식회사
- 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동 93번지
- 3. 사료공장 대표자 : 강 금 로

동무 번호	사료의 명칭	사 료 의 용 도	사 료 의 성 분				규 격 기 간
			최 소 량		최 대 량		
			단 위	비 율	단 위	비 율	
7-20	몬범아리배합사료	부화후대략 13주-초산까지 (우기)	이상 12.0	이상 2.5	이하 7.5	이하 10.0	1974. 6. 10
7-21	부로일리후기배합사료	부화후대략 4주이상 (육성용배합)	16.0	2.5	6.0	10.0	·
7-22	고깃소후기배합사료	고깃소후기용	11.0	2.0	10.0	10.0	·
7-23	농축배합사료	얇돈용 농축사료	16.0	2.0	4.5	13.0	·
7-24	농축배합사료	숙우용 농축사료	16.0	2.0	4.5	13.0	·
7-25	젓소용배합사료	생후대략 18개월이상 (2호)	13.0	2.0	13.0	12.0	·

◎ 서울특별시 교시제 77 호는 오일 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를  
 정한 등록고시

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의 시한 등록  
 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7 호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 성명	사 료			사 료 성 분 함 량			유요 기간 년월		
				종류	명칭	용 량	단위	단위	단위		단위	
3-76	유경리로 공업사	제기동 998	유시범	배합 사료	농축비 알사료	양돈용농축사료	16.0	2.0	4.5	13.0	76.6.11	
3-76	·	·	·	·	·	축우용농축사료	6.0	2.0	4.5	13.0	·	
3-77	·	·	·	·	·	젓소용 배합사료	상후대학 233일 이상 (2호)	12.0	2.0	5.0	12.0	·
3-78	·	·	·	·	·	작물(원료) 기초(원료)	작물성 사료 초대합사료	13.0	3.0	5.0	7.0	·

◎ 서울특별시 교시제 79 호

오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규제  
 1. 공해방지법 시행규칙 2조 발표  
 제3의 오일 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 
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였기 이를

고시한다.  
 가. 오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  
 규제내용

1974. 6. 20

서 울 특 별 시 장

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추가규제

(계수)

업종별 지역	오염물질 1일정량 배출 량(㎍)		아연 함유량 (㎍/ℓ)	동함유량 (㎍/ℓ)	카드뮴 함유량 (㎍/ℓ)	알루미늄 함유량 (㎍/ℓ)	수은 함유량 (㎍/ℓ)	유기인 함유량 (㎍/ℓ)	비소 함유량 (㎍/ℓ)	중금속 함유량 (㎍/ℓ)
	가	이	이하	이하	0.1이하	검출되지 않은 것	수은으로 검출되어 서 안됨	1 이하	0.5이하	1 이하
화학 공업	가	20	5 이하	3 이하	0.1이하	검출되지 않은 것	수은으로 검출되어 서 안됨	1 이하	0.5이하	1 이하
	나	30	"	"	"	"	"	"	"	"
	다	50	"	"	"	"	"	"	"	"
	라	100	"	"	"	"	"	"	"	"
계절 제강 압연업	가	20	"	"	"	"	"	"	"	"
	나	30	"	"	"	"	"	"	"	"
	다	50	"	"	"	"	"	"	"	"
	라	100	"	"	"	"	"	"	"	"
금속 제품 모는기 제기구 제조업	가	20	"	"	"	"	"	"	"	"
	나	30	"	"	"	"	"	"	"	"
	다	50	"	"	"	"	"	"	"	"
	라	100	"	"	"	"	"	"	"	"

(대기)

구분	오염물질	아연화합물 (Zn로서)	동화합물 (Cu로서)	카드뮴화합물 (Cd로서)	비화합물 (Pb로서)
피해지점허용농도(㎍/㎥)		0.1	0.1	0.0005	0.01
배출허용농도(㎍/㎥)				1.0	30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80 호

사료성분등록

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권하였기 고시한다.

1974. 6. 20.

사료관리법 제9조 및 동법제8조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1. 사료공장명 : 동원산업진흥주식회사 사료공장
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로동 636
3. 대표자주소 : " " " "
4. 대표자성명 : 김 재 식
5. 사료성분등록 내용

등록 번호	사료 종류	사료명칭	사료용도	사료의성분량				유효 기간
				최소 단백질	최대 지방질	최대 수분	최대 회분	
10-151	배합 사료	어린명아리배합사료	부화후대략 6 주까지	19.0	2.5	6.0	9.0	74.6.20 76.6.19 까지
10-152	"	중 " "	" 7-12 주까지	16.0	2.5	7.0	10.0	"
10-153	"	큰 " "	" 13주-로산까지(전기)	12.0	2.5	7.5	10.0	"
10-154	"	큰 " "	" (후기)	12.0	2.5	7.5	10.0	"
10-155	"	산란초기용 "	로산후부터대략 20 주까지	15.0	2.0	7.0	13.0	"
10-156	"	" 중기용 "	" 대략 21 주 ~ 35 주까지	14.5	2.0	7.0	13.0	"
10-157	"	" 말기용 "	" 36 주이상	14.0	2.0	8.0	13.0	"
10-158	"	" 초기용 "	로산후부터대략 20 주까지 (산란 중계)	15.0	2.0	7.0	13.0	"
10-159	"	" 초기용 "	" (부로일리중계)	15.0	2.0	7.0	13.0	"
10-160	"	부로일리전기 "	부화후대략 4 주까지	19.0	2.5	6.0	9.0	"
10-161	"	" 후기 "	" 4 주이상 (세미완성용)	16.0	2.5	6.0	10.0	"
10-162	"	" 후기 "	" (세미육성용)	16.0	2.5	6.0	10.0	"
10-163	"	" "	" (하이육성용)	16.0	2.5	6.0	10.0	"

동 목 번 호	사 료 종 류	사 료 명 칭	사 료 용 도	사 료 의 성 순 량				유 효 기 간
				최 소 한		최 대 한		
				조 단 백 분	조 단 지 반 백 분	조 단 삼 분 백 분	조 단 하 분 백 분	
10-164	배합 사료	부르일러 후기배합사료	부하후대략 4 주이상(하이만성용)	16.0	2.5	6.0	10.0	74.6.20 76.6.19 까지
10-165	"	젓배기송아지	생후대략 3 개월 까지	19.0	2.5	8.0	9.0	"
10-166	"	젓소송	" 3 ~ 6 개월 까지	14.0	2.5	10.0	9.0	"
10-167	"	젓소큰	" 6 ~ 18 개월 까지	12.0	2.0	12.0	11.0	"
10-168	"	젓소용	" 18 개월 이상(1호)	13.0	2.0	13.0	12.0	"
10-169	"	"	" (2호)	13.0	2.0	13.0	12.0	"
10-170	"	고깃교전기	고깃소전기배합사료	15.0	2.0	13.0	12.0	"
10-171	"	" 중기	" 중기	13.0	2.0	11.5	11.0	"
10-172	"	" 후기	" 후기	11.0	2.0	10.0	10.0	"
10-173	"	젓메기 돼지	생후대략 2 개월 까지	18.0	2.0	6.0	9.0	"
10-174	"	이랑 돼 지	생후대략 2 ~ 4 개월 까지	15.0	2.0	7.0	9.0	"
10-175	"	중	생후대략 4 개월 이상외 비유 는 날 8 개월 까지	12.0	2.0	8.0	10.0	"
10-176	"	씨	생후대략 9 개월 이상이 되는 돼지	12.0	2.0	11.0	11.0	"
10-177	"	농 축	농축배합사료(양돈용농축사료)	14.0	2.0	4.5	13.0	"
10-178	"	"	" (양돈용농축사료)	14.0	2.0	4.5	13.0	"
10-179	"	"	" (육우용농축사료)	14.0	2.0	4.5	13.0	"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10 호

관지계획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 
 창동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토  
 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3 조, 제 46 조  
 제 47 조 및 서울특별시 창동토지  
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9 조의 규  
 정에 의거 별첨도서와 같이 동지  
 구 일부토지에 대한 관지계획을  
 정하고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토  
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 
 공한다.
2. 관지계획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 
 계획국 구획정리 1 과에 비치하고
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
 별도 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  
 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 
 이 공고로 통지에 감응한다.

공 란 개 요

1. 사 업 명 : 창동토지구획정리사업
2. 사업집행지 : 도봉구쌍문동일부

3. 시행면적 : 20,059.60경 ( 4.4필지)

1974. 6. 10.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11 호

서울특별시회계관계  
기관회공인신조공고

서울특별시 낙성대수입금 세입을  
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과 난입 수  
 입금 출납원공안을 서울특별시 공인  
 조례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  
 이 신조하였기 동조례제 9 조에 의하  
 여 이에 공고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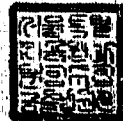
1974. 6. 10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용일자

74. 6. 10.

나. 공인의 인명

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12 호
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완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141 호 ( 72.10.16 ) 로 시심 결정하여 동 고시 제 23 호 ( 73.2.9 ) 로 실시 계획인가한 서울특별시 월거민이주 정착단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46 조제 2 항 및 제 3 항과 동법 제 85 조제 1 항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 ( 74.4.4 )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물 서울특별시주택구개량 1 과 및 은행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6. 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집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

신사동산 93 번지 ( 임 ) 의 1 권지

나. 사업경 :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

( 월거민 이주정착단지 조성 )

다. 사업종공면적 :

23,562평 ( 인가면적 23,500 평 )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각

마. 사업기간 : 73.2.15-74.6.15

바. 준공년월일 :

74.5.25

사. 준공도면 :

별첨 ( 도면상략 )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14 호

성동구사무 : 1 과문임수입금출납원공인계각공고

성동구 구청 문임수입금출납원인출공인조례제 6 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기 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.

1974. 6. 5

서울특별시장

1. 게재사용일자 : 1974.6.5

2. 직인의 인명 :

문임수입금출납원인



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15 호

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  
사업 실시 계획 공람 공고

1. 건설부고시제 470 호 ( 73.12.1 )  
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.  
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중 명륜  
구역 및 한남제1구역에 대한  
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 
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 
일로부터 14일간 일한인의 공람에  
공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주택국개발

2 과에 비치하며 재개발구역안의  
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  
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 
미수행자에게는 이 공고로 통지에  
같음한다.

1974. 6. 17

서울특별시  
공람 개요

- 가. 사업명 :  
명륜구역 및 한남제1구역 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실행면적 :  
139,000㎡ ( 981필지 )
- 다.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	비고
5 (1-7)	명륜구역	명륜3가산3의15번지 일대	100,000㎡	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
139 (8-5)	한남제1구역	한남동726번지일대	39,000㎡	

○ 서울특별시 공고제 117 호

서울특별시소방본부사법경찰관인공고

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함과  
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 
서울특별시소방본부 사법경찰관을  
신 조한것기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  
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4. 6

서울특별시장

1. 공인사용일시 : 74.6.20. 09:00
2. 공인의 인명

서울특별시소방본부  
사법경찰관인

서울특별시소방본부  
사법경찰관인

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18 호

환지 처분 결정 공고

1. 구획정리사업법제 61 조에 의거 67.1.18 자 환지처분결 서포토지구 획정리사업지구 76 구획내 서포동 358-10호의 재산물 토지소유자합 의에 따라 현황추당하여 실사용 면적을 환지면적으로 정하고, 각 필지의 권리면적은 지역내 공동감보율을 적용하며, 신생도로는 사용자 동분부담으로 산출하여 분할묘자 이를 공고한다.
2. 동지역변경내용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지구화정리 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3.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될 것이나 송달을 받지 못하는 소유자는 이 공고로 통지에 갈음한다.

1974. 6. 20

서울특별시 장



○ 서울시에규 제 272 호

미상소집실시규정중개정규정

미상소집실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호 중 「 1 단 . 및 . 남부 . 와 . 3 단 . 에 . 매남 . 을 각각 신설하고 . 3 단 . 중 . 북부 . 문 . 4 단 . 에 삽입한다.

제 7 조 중 제 4 호를 제 6 호로 하되 동 조에 제 4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파출소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전 경찰관에 대하여 현장전달부 전환달 방법으로 구분하여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.

5. 전환전달시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 4 호서식의 2 전환 전달부치 기재하여야 한다.

다만 현장 전달시에는 소집전달표를 미전달자에 수표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제 2 호 나항에 「 전환전달부 . 를 삽입한다.

별지중 별지제 4 호의 서식의 2 문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제 7 호 서식 및 별지제 8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1974. 6. 20 부터 시행한다.

별지 제 4 호서칙의 2

권 화 권 달 부

순 수	제 단	성 명	의견달자권희번호	견담시간	견과수명자	견담자

별지 제 7 호서칙

거주군내서간응소자수송

구분	구분	출발시	정유지	도착지
1	간	남대문 영동 영남	용산 - 노랑 노랑 - 노랑 노랑 - 노랑	영남동대 영남동대 영남동대
2	간	중서마 중서마	서서대 서서대	마중서 마중서
3	간	성동태 성동태	성창량 성창량	동태성 동태성
4	간	중부 중부	동대문 - 성부 성부 - 동대문	북동 북동

별지 제 8 호서칙

노선별수송코스및집결지

- 1코스 : 남부-노랑진-용산-문각-동대문-성창량-태양
- 2코스 : 영동포-마포-서대문-문각-성부-북부
- 3코스 : 서부-중포-남대문-문각-성부-성동-동부
- 4코스 : 동부-성동-중부-문각-중포-서부
- 5코스 : 태양-성창량-용포관-문각-용산-노랑진-남부
- 6코스 : 북부-성부-문각-서대문-마포-영동포

사 명

○ 1974. 6. 8

구회정리1차 지방행정 원 유 철  
주 사 보  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○ 1974. 6. 10

영 동 포 구 지척기사 김 동 식  
관악구 근무를 명함.  
중 로 구 지척기사 안 용 기  
동대문구파견 (74.10.5 까지)  
근무를 명함.

중 구 지척기사보 심 광 수  
영동출장소 파견 (74.9.5 까지)  
근무를 명함.

관 악 구 지방지척 박 영 환  
기 사  
세정과 근무를 명함.

동 대 문 구 지방지척 안 중 무  
기 사  
영동포구 근무를 명함.

서 대 문 구 지방지척 장 윤 수  
기 사  
중구 근무를 명함.

박 준 완  
지방비서관 (3급을류상당)에 임명.  
1호봉을 급함.

중무과 근무를 명함.

○ 1974. 6. 12

경 기 도 지방악무 이 상 현  
심남시보전소 기  
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 
지방악무기원에 임함.

1호봉을 급함.

영 동 포 구 보 전 소 근무를 명함.  
중 로 구 (지위 지방행정 시 훈  
해 계 중) 시 기  
부적을 명함.  
마포구 근무를 명함.

○ 1974. 6. 13

도시계획과 지방토목 김 박 재  
(재개발과) 과  
전시국가지도회최본부 파견근무를  
명함. (74.6.12-6.28 까지)

성 동 구 지방행정 조 영 수  
시 기 보  
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.

○ 1974. 6. 15

영 동 포 구 지방행정 박 찬 오  
도 립 1 동 주 사 보  
중무처 진출을 명함.

○ 1974. 6. 17

시립운동장 지방전기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김 영 용

기 전 과 지방전기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송 용 찬

기 전 과 지방전기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노 환 석

총 무 과 기계기사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강 부 봉

수리사업소 기계기사  
판리사업소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정 나 천

토목사업소 지방화공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홍 정 선

도 가스사업소 지방화공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조 성 학

환경 과 지방화공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김 중 구

도 가스사업소 지방기계  
기  
공업과파견 근무를 명함. 이 원 봉

주택건설과 지방전  
기  
복직을 명함. 박 창 식

2호봉을 급함.

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.

중구보검소 지방간호  
기  
박 수 린
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○ 1974. 6. 20

지방의무기결시보에 임함. 최 한 상

1호봉을 급함.

용산구 보검소장에 보함.

중 구 지방행정  
기  
등대문구 근무를 명함. 조 병 수

영등포구 지방행정  
기  
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. 강 경 순

지하철본부(전 지방전기  
차과장직무대리) 기  
지방전기기점에 임함. 배 원 근

2호봉을 급함.

지하철본부 전차과장에 보함.

내무국총무과 지방교원원 명 피 숙

용산구 근무를 명함.

용 산 구 지방교원원 오 한 숙

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.

내무국총무과 지방교원원 최 화 자

등대문구 근무를 명함.

등대 문구 지방교원원 김 복 순

내무국총무과 근무를 명함.

영 동 포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 기	유 병 식	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
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		마 포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지준갑
영 동 포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 기 보	정 영 목	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
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		심 북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이대석
서 대 문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 기 보	김 원 제	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
도시가스사업소	근무물 명함.		서 대 문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기보 안천수
서 대 문 구 수도사업소	지방행정 서 기 보 시 보	이 소 광	심북구	근무물 명함.

서울특별시